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5. 5.

-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본관 301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 재외국민 담당자 앞
[TEL] 054-478-7963 [FAX] 054-478-7063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iphak.kumoh.ac.kr>

【 목 차 】

■ 전형안내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전형별 지원자격 및 세부기준	3
4. 전형방법	6
5. 제출서류	7
6. 전형료	8
7.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8
8.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8
9. 학교폭력조치방안 반영방법	9
10.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10
11. 생활관(기숙사) 안내	10
12. 지원방법 및 입학상담	11

■ 제출서식

[서식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12
[서식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종합기록표	1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5
[서식4] 사실증명발급 · 열람신청서	16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학원서 접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25. 7. 7.(월) 9:00 ~ 11.(금) 18:00	(39177)경북 구미시 대학로6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본관 301호)
추가 서류 접수	2025. 7. 7.(월) 9:00 ~ 26.(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25. 12. 12.(금) 18:00 이전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서 교부 및 제출)	2025. 12. 15.(월) ~ 17.(수) 10:00 ~ 16:00	입학처(본관 301호) ※ 팩스 접수 가능 (FAX : 054-478-7063)
합격자 최종 등록 (등록금 및 생활관비 납부)	2026. 2. 3.(화) ~ 5.(목) 10:00~16:00	본교 지정 은행 (등록금고지서 조회 일정은 별도공지)

※ 위 일정은 입학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iphak.kumoh.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재학 및 근무기간에 산정 (휴교 : 개인소명서 및 해당학교 휴교확인서, 휴업 : 해당기관 및 사측의 휴업증명서(원본으로 제출))

모 집 단 위	학과 및 전공(과)	입학정원의 2% 범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모집단위별 10%)	입학정원의 2% 범위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9	24명 이내
	건축학전공(5년제)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4	
	기계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전공		6	
산업·빅데이터공학부	산업공학전공	7	
	수리빅데이터전공		
재료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10	
	신소재공학전공		
전자공학부	반도체시스템전공	14	
	전자시스템전공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11	
	인공지능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화학소재공학부	소재디자인공학전공	7	
	화학공학전공		
	화학생명소재전공		
광시스템공학과		2	
바이오메디컬공학과		3	
경영학과		2	
합 계		85명	24명

※ 입학정원의 2% 이내 범위 : 해외근무자의 자녀(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되,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

※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 입학정원 제한 없음 : 전교육과정이수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전형별 지원자격 및 세부기준

1. 전형별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총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정원외)

구분	자격요건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년)					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 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 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 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3년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 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 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 한 자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자격구분	자격요건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공통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 수한 재외국민	초,중,고 전 교육과정기간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 수한 결혼 이주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기간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 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통일부 확인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자는 자 1. 국내·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검정고시자 3. 국내 교육과정 학력인정자

2. 지원자격 관련 세부기준 및 해석

□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근무자의 범위

- 상사직원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바. 공무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 연수 ·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현지 취업자의 범위
 - 가. 국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 나.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준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재학연한 인정기준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거주기간, 학력,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입학처에서 결정함

1. 전형방법 : 고등학교 교과성적 100%
2. 국외고 이수자 성적 산출 : 이수한 전과목에 대해 과목별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석차 등급 및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각 과목 등급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교과성적으로 반영

국외고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0	89~87	86~80	79~77	76~70	69~67	66~60	60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 ※ 1. 성적이 없는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
 2. 최종 교과반영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

3. 선발원칙

- 가.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 나. 입학전형요소 성적(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선발방법

- 가.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모집단위별 후보자로 선발.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 별 후보자 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발
- 나.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범위(소수점은 절사하며,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내에서 전체 지원자의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총 입학정원의 2% 이내 여석)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선발함.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충원합격자로 선발함. 이 경우 후보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다. 동점자 처리원칙

- 1)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1순위 : 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중 수학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 장기간 해외 수학을 한 자
- 2)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장기간 해외 수학을 한 자

5

제출서류

- ☐ 추후 모집요강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원본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함
-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입학원서(본교서식) 3. 지원자 종합기록표(본교서식) 4. 코로나-19 소명자료(해당자에 한함)
국외 근무자의 자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국내고등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5.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사본(부, 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해당)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해당)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국적취득사실증명서(또는 귀화허가 통지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료

- ☐ 무료

7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영어)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 대조 확인을 필요하여야 함
- ☐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본교 등록 후 입학 시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정확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접수 확인 시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본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포기자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함
- ☐ 출입국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주민센터 Fax 민원 및 인터넷 발급가능)
 -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지원자의 해외 학업 개시일부터 조회하여 제출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biz/main/main.do>)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 합격자 발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s://iphak.kumoh.ac.kr>
- ☐ 등록금 납부 :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유의사항
 -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에 대한 일정, 발표방법 등을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여야 함

9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

구분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감점없음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
제4호	사회봉사	-4
제5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
제6호	출석정지	-20
제7호	학급교체	-50
제8호	전학	부적격처리
제9호	퇴학처분	부적격처리

※ 지원자별 산출 총점에서 감점하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 반영하지 않음

※ 학교폭력조치사항 적용 최종 시점 : 모집시기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0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 입학원서의 “전형기간 중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 입시 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 책임으로 함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더라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초과접수는 취소됨.
다만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은 제외함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최종합격한 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 내 전형 간 복수지원 할 수 없음
 - 대학 내 동일한 전형에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함
- 복수지원, 이중등록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대학복수지원 금지 위반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함
-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등록확인서 작성 후 입학처로 제출하고,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합격자가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본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1

생활관(기숙사) 안내

- 생활관 : 2인 1실, 각 방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등 기본시설 구비
(생활관 선발 상황에 따라 인원배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우리대학 내 1개 학부(과)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접수된 입학원서는 접수 및 취소할 수 없음
- ☐ 입학상담 및 원서접수처
 - 입학상담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 ☎ 054-478-7061
 - 원서접수처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본관 301호)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종합기록표

▶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 재학정보

학교명	소재국가명	이수과정		입학/전학 (년 월 일)	이수과정		이수/졸업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개월 일)
	도 시 명	학 년	학 기		학 년	학 기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총 재학기간 : ()년 ()개월 ()일								
국내소재 학교 재학기간 : ()년 ()개월 ()일								
외국소재 학교 재학기간 : ()년 ()개월 ()일								

-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한 순서대로 모든 학교를 기재함
- ※ 이수학년은 중학교 과정을 7~9학년, 고등학교 과정을 10~12학년으로 기재함

2. 외국학교 수학 관련 사항

학교명	소재 국가명	재학기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E-mail	홈페이지
	도 시 명	기간	재학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3. 체류기간 <학생의 특레인정기간 중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

구분	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지원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본인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	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부친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구분	체류기간						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원자 모친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체류기간과 일치하도록 작성

4. 부모의 해외근무(영주)정보 <학생의 특레인정기간 중 근무·영주(거주)에 대한 정보>

구분	성명	직업	직장명	해외근무(영주)		
				근무(영주)국가명	근무(영주)기간	
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최초 근무(영주)국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작성, 외국근무기간은 보호자 경력증명서 상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작성

5. 외국 영주권자 기재사항

구분	성명	국적	국가명	영주권 번호	취득일	비고
지원자						
부						
모						

제출자 : _____ (서명)

[서식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참고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4. 12.>

(앞쪽)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Where a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210mm×297mm[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